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변화와 시사점

최근 김상조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김상조 내정자는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시작으로 그동안 ‘재벌 저격수’, ‘기업 저승사자’ 등으로 이름을 떨쳐 왔던바, 김상조 내정자의 이런 이력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내정자의 기자회견담화 내용을 기초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방향을 예상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기자회견담화 내용

김상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향후 법집행방향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그룹 사안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좀 더 엄격하게 평가
 -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
 -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4대 그룹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평가
- 임기 초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에 총력
 -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삶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임
-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
 - 현행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며 신설국의 명칭은 조사국이 아니라 기업집단국으로 함
 - 경쟁법 집행은 공정위의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의 민사 규율, 검찰의 형사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해야 하므로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는 더 큰 관점에서 논의 필요
-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
 -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추진의사가 없음

2.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평가

김상조 내정자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김 내정자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궁극적 목적을 ‘경제 살리기’에 두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생각을 정부조직 내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언급하였는바 활동가의 입장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정 경쟁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함으로써 경제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내정자가 재벌개혁보다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움으로 인해 기업들은 김상조 교수의 내정을 마냥 걱정하기보다 어느 정도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법집행 방향에 대한 시사점

학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제안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부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 내정자가 급격한 법 집행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혁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 현실성이 있는 접근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약자 보호는 경제활력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비록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집행이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 내정자가 언급하였듯이 임기 초에는 가맹본부, 본사, 대규모 유통업체, 원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 해소 또는 약자보호 문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바,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과 관련하여 1)법률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 2)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 3)법령 개정없이 집행이 강화될 사항, 4)새 정부의 변화된 환경에 특별히 유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

-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가칭) 구성
- 다중대표소송제, 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강화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고발요청권자 범위 확대
-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2)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

-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확대(규제 대상 지분을 기준 강화)

3) 법령 개정이 없어도 집행이 강화될 수 있는 사항

-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담합행위 등 주요 범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부과과징금의 수준 상향)

4) 새 정부의 변화된 환경에 특별히 유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조직 강화 및 인력보강(대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기업집단국 설치)
- 분쟁조정실의 실효성 제고(공정거래조정원의 권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송웅순 대표변호사	TEL. 02 316 4001	E-Mail. wssong@shinkim.com
강신섭 대표변호사	TEL. 02 316 4046	E-Mail. ssbkang@shinkim.com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630	E-Mail. dybaek@shinkim.com
정종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347	E-Mail. jcjung@shinkim.com
상원종 고문	TEL. 02 316 4403	E-Mail. wjsang@shinkim.com
윤용로 고문	TEL. 02 316 4065	E-Mail. yryun@shinkim.com
노형철 고문(세무사)	TEL. 02 316 4483	E-Mail. hcrho@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